

퇴직연금 기금화, 세부 조율 중인 쟁점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세부 쟁점을 조율 중입니다.

01	수탁법인 수 제한 사전인가제로 5~8곳 검토, 중소형 금융사 반발
02	국민연금 참여 '증시 부양 수단' 우려, 차별성 의문도 제기
03	운영 주체 구분 국회 법안들은 민간·공공 등 서로 다른 모델 제시

초기 논의부터 조율 단계까지

- 2026.02.23 노사정 공동선언·당정협의를, 기금화 단계적 확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필요성 확인
- 2026.06.27 국민연금 운용 참여 놓고 차별성 의문·'증시 총알' 논란 부상
- 2026.07.08 기금형 설계안 8월 초 발표,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도입 계획 보도
- 2026.07.09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 2026.08.06 보험업계 점유율 20% 하락, 기금형 도입 시 자금 이탈 우려 보도
- 2026.08.09 보험연구원, 독립적 수탁법인 사전인가제 도입 필요성 보고서 발간
- 2026.08.11 수탁법인 수 10곳 미만(5~8곳) 제한 방향 보도, 국민연금 참여 방식 등 막판 조율 중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고용노동부가 설계안을 발표한 뒤, 연내 법 개정안 제출이 예상됩니다.

조율 쟁점 사항은?

수탁법인 수

TRUSTEE CAP

사전인가제로 10곳 미만(5~8곳) 제한을 검토 중이며, 중소형 금융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참여

NPS ROLE

퇴직연금 자금의 '증시 부양 수단' 활용 우려와, 민간 재위탁 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

GOVERNANCE

국회 계류 법안들은 민간 수탁법인·전문운용사·공공공단 등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5~8 곳

- 정부가 검토 중인 수탁법인 인가 수
- 사전인가제 도입, 10곳 미만으로 제한
- 인가 기준에 따라 시장 참여 구도 변화

국회 계류 법안, 세 가지 모델

수탁법인 모델

노사 설립 법인 중심
민간 운영

운용사 모델

민간 전문운용사가
직접 운용

공공 모델

퇴직연금공단 신설해
운영

이해관계자 별 영향

사업자

PROVIDERS

은행·증권사·보험사는 인가 요건과 수 제한에 따라 참여 기회가 갈리고, 중소형사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INSURERS

적립금 107조원에도 점유율은 20% 아래로, DB형 자금의 증권·운용사 이동을 우려합니다.

국민연금

NPS

수탁법인 또는 운용사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참여 방식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기업(사용자)

EMPLOYERS

수탁법인 설립에 노사가 공동 참여하며, 사외 적립 의무화가 강화되면 재무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근로자

EMPLOYEES

운용 주체와 방식이 바뀌면서 수익률과 수급권 보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 01
 - 수탁법인 인가 요건과 수 제한 기준 확정 시점 주시
 -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일정 확인
- 02
 - 자사의 수탁법인 자격 확보 가능성 사전 검토
 - 수탁법인이 평가할 수 있는 운용 실적·경쟁력 정비
- 03
 - 계약형 사업자는 DB형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
 - 사외 적립 의무화 추진에 따른 재무 부담 점검

남은 쟁점

수탁법인 수와 국민연금 참여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설계안에 따라 시장 참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